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렌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총 계				95	
제3회 임 용 시 험 (경력경쟁)	9급	시 설	일반토목	52	도일괄 50 (강원도 5, 춘천 1, 강릉 6, 태백 1, 속초 3, 삼척 3, 횡성 1, 영월 4, 평창 9, 철원 4, 화천 2, 양구 3, 고성 8, 양양 2)
			건 축	26	도일괄 26 (강릉 1, 태백 1, 속초 2, 삼척 3, 홍천 2, 횡성 2, 영월 2, 평창 3, 철원 1, 화천 1, 양구 1, 인제 3, 고성 4)
			지 적	17	도일괄 17 (태백 1, 삼척 1, 횡성 1, 영월 2, 평창 4, 철원 2, 화천 2, 양구 3, 인제 1)

- ‘도일괄’ 구분모집은 해당 모집단위 응시자 전체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시험과목

※ 전 과목 강원도 자체출제

시험명	직 급	직 렌	직 류	시 험 과 목(제1·2차 병합시험)
제3회 임 용 시 험 (경력경쟁)	9급	시 설	일반토목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시험명	직 급	시험시간	비 고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60분 (10:00 ~ 11:00)	3과목

나.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합니다.

4. 문제출제

가. 제3회 임용시험의 모든 과목은 강원도 자체출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명	비공개 대상 과목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모든 과목 비공개 대상(8개 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5.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구분모집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9급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 급	직 렌	직 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3회 임 용 시 험 (경력경쟁)	9급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11.8(월)~ 11.12.(금)	11.15.(월) ~11.16.(화)	필 기	12.1.(수)	12.11.(토)	12.30.(목)
			면 접	12.30.(목)	2022. 1.12.(수)	2022. 1.21.(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도정마당-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지 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 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문의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공통적용 가산점 제도(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등)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부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수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입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진출(전보)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